

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

지역	기관·단체명	전화번호
서울	(사)서울시장애인부모회	02-356-4889
부산	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	051-790-6125
대구	(사)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	053-621-2600
인천	(사)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	032-818-2096
광주	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	062-229-9701
대전	(사)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	042-488-9457
울산	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	052-242-1780
세종	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	044-866-0180
경기	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	031-239-6393
강원	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	033-255-2491
충북	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	043-237-8304
충남	(사)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	041-338-1762
전북	(사)장애인인권연대	063-901-1131
전남	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	061-755-4523
	(사)목포YWCA	061-244-1366
경북	(사)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	054-701-0420
경남	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	070-7725-3967
제주	(사)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	064-725-13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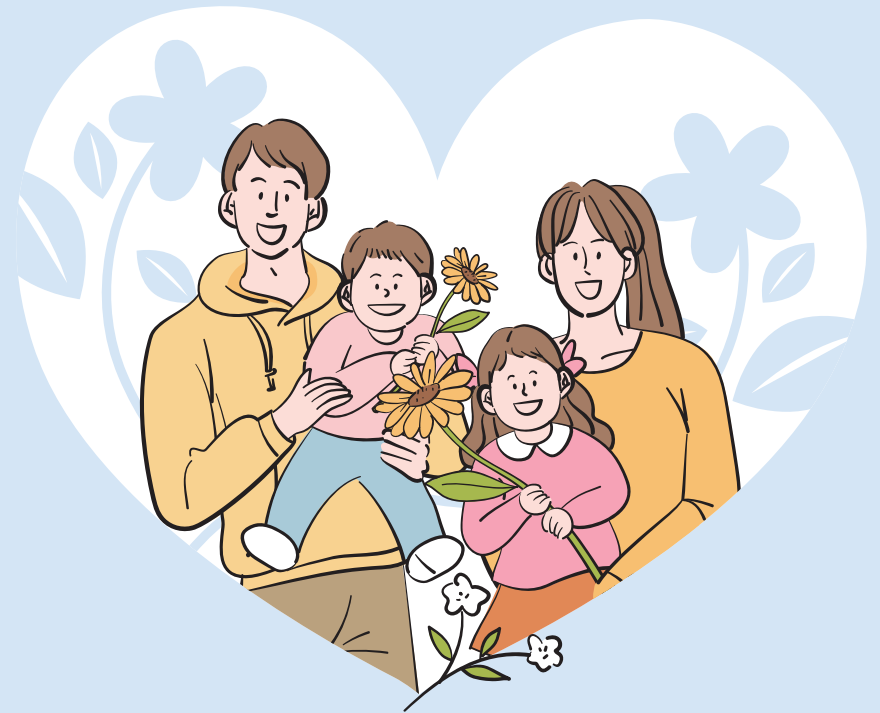
※ 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서 장애아돌보미 활동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

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8조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, 18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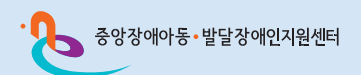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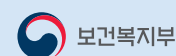
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파트너!
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

장애아돌보미 활동 안내



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☎ 02-3433-0757 🌐 www.broso.or.kr

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?
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,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**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**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의 **휴식지원 프로그램**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자격기준

건강상태가 양호한 **70세 이하** 활동가능한 자로서,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**양성교육을 수료**한 자

양성교육

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돌보미는 총 40시간(이론 30시간 + 실습 10시간)의 양성교육(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,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등)을 수강해야 합니다.

< 양성교육 감면 기준 >

교육시간	우대자 자격기준	비고
총 20시간 (이론 10시간 + 실습 10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영양보호사 재활관련·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(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자 360시간 이상인 자)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자 180시간 이상, 360시간 미만인 자) 	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
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(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자 360시간 이상인 자) 	

보수교육

사업시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장애아돌보미는 **연 8시간 이상**의 보수교육(장애아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, 장애아돌보미 직업윤리 및 철학 등)을 수강해야 합니다.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.

주요활동

장애아돌보미는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등에 방문하여, 아동과의 학습 및 놀이활동, 안전·신변보호 처리, 외출 지원 등의 **돌봄서비스를** 제공합니다. * 가사활동 제외

활동절차



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활동 신청



사업시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서류 및 면접심사 참여



양성교육(총 40시간, 이론 30시간 + 실습 10시간) 수료
*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



사업시행기관에서 진행하는 **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** 참여



사업시행기관에 등록된 **장애아돌보미로서 돌봄서비스 제공**



보수교육(연 8시간 이상) 수료
*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임

근무조건

수당지급

•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. * 1회 방문 시, 기본 1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

지급내용

- 돌보미 급여 : 급여 지급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수당 지급
- 법정수당 : 주휴, 연차, 휴일근로, 연장근로, 야간근로수당
- 명절수당(연 2회 설·추석) : 각 100,000원씩 지급 * 단,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
- 4대 보험비
- 퇴직금
- 원거리 교통비 *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
 - 섬·벽지(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·벽지) 및 읍·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장애아돌보미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까지 편도로 3km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3km 이상 6km 미만 이동 시 4천원, 편도 6km 이상 10km 미만 이동 시 6천원, 편도 10km 이상 이동 시 9천원 지급
 - 섬·벽지·읍·면 지역 외 편도 20km 이상 이동 시 9천원 지급